< 전주우체국 공고 제 2025 - 01호 >

2025년도 제1회 상시계약집배원 채용 공고

전주우체국에서 우편물 집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상시계약집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8.

전주우체국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인 원	근무예정우체국 (근무지역)	담당업무	비고
상시계약집배원 (공무직)	1명	전주우체국 (전주우체국 집배 관할지역)*	○ 우편물수집 및 배달 ○ 기타 부대업무	

*** 전주우체국 집배 관할지역: 전주, 완주(구이,상관,이서)**

2. 근무 조건

○ 신분 : 공무직 근로자(비공무원)

*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보 수 : 기본급+수당

- 기본급 : 월급 1,956,270원(2025년 기준)
- 수당 : 가족수당, 운전수당, 근속수당,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등
- 실적수당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상시출장여비 등
- 기타 :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맞춤형복지제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등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금), 1일 8시간(08:00~17:00)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 우체국 사정에 따라 근무일(월~금 또는 화~토) 변경될 수 있음

※ 출근, 퇴근시간은 우편물 배부 시간을 감안하여 변동 가능

※ 초과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 휴가 : 연차유급휴가, 공무유급휴가, 특별유급휴가 등

○ 업무 특성 : 일평균 500여통 이상(최번기 900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kg내외(최고 30kg)의 다량의 소포를 집배차량(자동이륜차)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배달하기 위한 체력이 필요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 최종시험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 자격증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동시 소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참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중 조건J(다륜형)는 이륜차를 운전할 수 없는 한정면허임)

다. 지역제한 :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라. 응시자격 제한

○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사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위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

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 한) 중 1개 이상 소지자

※ 취업지원 대상자 등은 '가' 항의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며 '정보화자격증'과 '취업지원대상자' 등의 심사항목에 2개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 각각 1개의 자격만을 반영함.

다. 근무경력

○ 집배 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우체국소포원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재택 · 통상 · 소포위탁배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 제출자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4대보험(고용보험 등)중 1개의 자격득실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자격 취득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경력을 인정

5. 시험 방법

시험단계 / 채용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상시계약집배원	서류전형	실기	면접시험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 · 부적격 여부만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적극적 서류 전형 심사기준에 의해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 서류전형 심사기준

심사항목 / 배점	자격요건 만족도	직무관련 경력	무사고 경력	자기소개 충실성실성	정보화 자격증	취업지원 대상자 등
100점	15점	30점	30점	10점	10점	5점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 검정

- 체력 검정(3종목) :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 펴기, 소포상자이동하기

- 검정기준표 : 붙임참조

- **체력 검정 면제 : 「국민체력 100」 인증서*(3등급 이상) 제출자**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후 발급하는 인증서(무료)로 인증일이 실기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인 인증서(3등급이상)에 한함**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 실기 시험에서 탈락할 경우 면접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ㅇ (최종합격자 결정)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 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 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ㅇ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항목이상을 '하'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면접 시험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지참한 후 면접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면접 대기 장소에 입장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면접 당일 대기 장소에서 배부

ㅇ 면접이 시작된 이후에는 면접 대기장 입실 불가 및 면접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리니, 반드시 면접 시험 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서류 접수

가. 원서접수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나. 접수기간 : **2025. 5. 12.(월) ~ 2025. 5. 15.(목),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시 문의사항은 고용24 콜센터(1577-7114, 1544-4430)문의

※ 최종 접수 여부는 마이페이지 - 입사지원 관리 - 알선/입사지원 내역에서 반드시 확인,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라. 구비서류 첨부 : 온라인 접수시 PDF·JPG 파일(성명_서류명) 첨부
또는 등기우편 제출(온라인 첨부가 어려울 경우)

- 접수처 : (5496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전주우체국 지원과 인사 담당자 앞
- 우편 제출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응시원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함**

* 구비서류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상시계약집배원 응시원서 구비서류 재중**』 표시

※ 응시표는 실기· 면접시험 당일날 교부(※응시번호는 SMS문자로 송부)

마.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수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모집공고 : 2025. 5. 8.(목) ~ 2025. 5. 15.(목)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5. 5. 12.(월) ~ 2025. 5. 15.(목) 18:00까지

다. 서류전형 및 합격자 발표 : 2025. 5. 20.(화)

라. 실기 및 면접시험 : 2025. 5. 27.(화)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5. 29.(목)

바.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 등 모든 시험 일정은 전주우체국 홈페이지, 나라일터,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채용 안내 홈페이지에 게시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다. 운전경력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면허발급 이후 전체기간의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내역이 나타나야 하며, 운전면허경력란에 **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되도록 제출

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이 확인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 경력검증 시 미비할 경우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사항(해당자 한)**

✓ **필수1 : 4대 보험(고용보험 등)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내역 1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

✓ **필수2 :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 1부**

마.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ㅇ 주소변동 이력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ㅇ **남자는 병적사항이 기록된 것**,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ㅇ 초본교부 신청시, 신청내용을 **『전체포함』**으로 선택하여 발급

사.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각 증명은 해당자에 한함)

자.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차. **「국민체력 100」 인증서(3등급 이상)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후 발급하는 인증서(무료)로 인증일이 실기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취득분을 실기시험 전까지 제출할 경우 체력검정 면제**

카. 체력검정 응시 동의서약서 1부(해당자한)

※ 주민등록초본,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2025.5.8.)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전주우체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ㅇ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전주우체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주우체국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통하여 발송

ㅇ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5.5.29.(최종합격자발표일)~25.6.12.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라. 공무직 상시계약집배원은 비공무원이며,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 가능

마. 공무직 상시계약집배원 근무경력(3개월이상)은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

바.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같을 경우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공고

ㅇ 재공고했음에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사.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아. 실기시험 실시 중에 발생되는 인적 피해 및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임을 양지

자.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바람.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주우체국 지원과(063-230-2822)로 문의바람.